



외국인이주 · 노동운동협의회

Joint Committee with Migrants in Korea (Member of MFA)

서울시 종로구 창신 6다길 8-4 T.02)312-1686

www.jcmk.org / jcmkoffice.tistory.com / jcmkoffice@gmail.com

수 신 : 언론사 사회, NGO, 다문화 담당 기자

제 목 : [외노협 논평] 대법원의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며

2015년 6월 25일 대법원은 ‘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(이하 이주노조)’이 서울지방 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‘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’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했다. 이는 이주노조 설립 신고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된 지 8년 만에 이루어진 판결이며, 이주노조가 설립된 지 10년 만에 이루어진 합법화 소식이다.

그 동안 이주노조와 함께 연대하여 이주노조의 합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온 우리 ‘외국인이주·노동운동협의회(이하 외노협)’은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.

이주노조는 10년 전 2005년 4월 24일 창립총회를 갖고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했지만 당시 노동부는 “불법취업 외국인은 노동3권 행사의 주체로 볼 수 없다”면서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이다. 이에 이주노조는 ‘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 취소 소송’을 제기했으며, 2007년 고등법원에서 승소 하였다.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며, 8년이 지나서야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 한 것이다.

이주노조 설립 후 10년 동안 정부는 이주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노조 대표자들을 표적 단속하여 강제 추방시켰다.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이 후 선출된 임원들이 모두 표적 단속되어 출국 되었다.

이번 판결은 이렇듯 이주노동자들 스스로 한국 사회를 향해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외치며 땀 흘려 일구어낸 희생과 노력의 결과이다. 이 같은 이주노동자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뒤늦게나마 대법원에서 이주노조를 인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.

이제 이주노조는 합법적인 틀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해 나갈 것이며, 또한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. ‘외국인이주·노동운동협의회’는 앞으로도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이주노조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.

2015년 6월 26일

외국인이주·노동운동협의회